

2018년 속초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속 초 시 장(인)



- ◆ 우리 시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38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664억원)보다 2,276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1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17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499억원입니다.
- ◆ 우리시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5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51%입니다.
- ◆ 우리시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2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도)의 재정은
 -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전체 살림살이 규모와 의존재원이 적어 재정 재정자주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추가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비효율 예산에 대한 절감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예산경영담당 전재호(033-639-2113)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속초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3,388	3,103	285	5,664	5,123	541
	세 출 예 산	3,388	3,103	285	5,664	5,123	541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2.59	23.68	△1.09	22.17	22.13	0.04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3.51	64.00	△0.49	66.84	66.07	0.77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32	93	△61	30	49	△19
재정운용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4(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속초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8,776	270,547	29,523	11,693	27,01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93,798	272,845	282,207	310,295	338,77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10,015	100.00	215,322	100.00	217,336	100.00	246,811	100.00	270,547	100.00
지 방 세	29,099	13.86	29,112	13.52	30,330	13.96	33,900	13.74	37,700	13.93
세외수입	11,360	5.41	7,802	3.62	8,968	4.13	10,238	4.15	12,145	4.49
지방교부세	85,348	40.64	85,348	39.64	76,000	34.97	89,500	36.26	100,700	37.22
조정교부금 등	6,680	3.18	5,500	2.55	7,000	3.22	10,000	4.05	10,000	3.70
보 조 금	73,828	35.15	81,360	37.79	79,597	36.62	88,861	36.00	98,730	36.49
지 방 채	-	0.00	-	0.00	-	0.00	-	0.00	-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00	1.76	6,200	2.88	15,441	7.10	14,312	5.80	11,272	4.1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 1년 동안 속초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8,776	270,547	29,523	11,693	27,01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93,798	272,845	282,207	310,295	338,77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10,015	100.00	215,322	100.00	217,336	100.00	246,811	100.00	270,547	100.00
일 반 공 공 행 정	17,538	8.35	17,347	8.06	16,583	7.63	16,229	6.58	19,652	7.26
공공질서 및 안전	2,341	1.11	2,520	1.17	2,721	1.25	1,651	0.67	1,376	0.51
교 육	2,630	1.25	4,053	1.88	3,794	1.75	4,417	1.79	5,530	2.04
문 화 및 관 광	22,349	10.64	12,565	5.84	16,598	7.64	13,932	5.64	19,801	7.32
환 경 보 호	11,514	5.48	13,542	6.29	11,068	5.09	15,315	6.21	15,479	5.72
사 회 복 지	72,051	34.30	74,139	34.43	79,519	36.59	88,900	36.02	101,227	37.42
보 건	2,997	1.43	3,494	1.62	3,847	1.77	4,619	1.87	4,769	1.76
농 립 해 양 수 산	12,404	5.91	14,074	6.54	10,938	5.03	11,973	4.85	15,332	5.67
산 업 · 중 소 기 업	9,733	4.63	10,306	4.79	5,552	2.55	15,709	6.36	5,186	1.92
수 송 및 교 통	12,656	6.03	14,803	6.87	16,063	7.39	16,597	6.72	22,439	8.2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023	1.92	3,904	1.81	5,947	2.74	6,860	2.78	8,079	2.99
과 학 기 술	-	0.00	-	0.00	-	0.00	-	0.00	-	0.00
예 비 비	2,111	1.01	2,175	1.01	2,401	1.10	4,270	1.73	3,173	1.17
기 타	37,668	17.94	42,400	19.69	42,305	19.47	46,339	18.78	48,503	17.9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속초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316,565	345,582	29,018	9.17
속초시	310,295	338,776	28,481	9.18
교육청	해 당 없 음			
공사·공단	6,270	6,806	537	8.56
출자·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sokcho.go.kr>)
(행정정보 → 예산/경영 → 지방재정공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속초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59 (18.42)	270,547	61,117 (49,845)	209,430	-	0 (11,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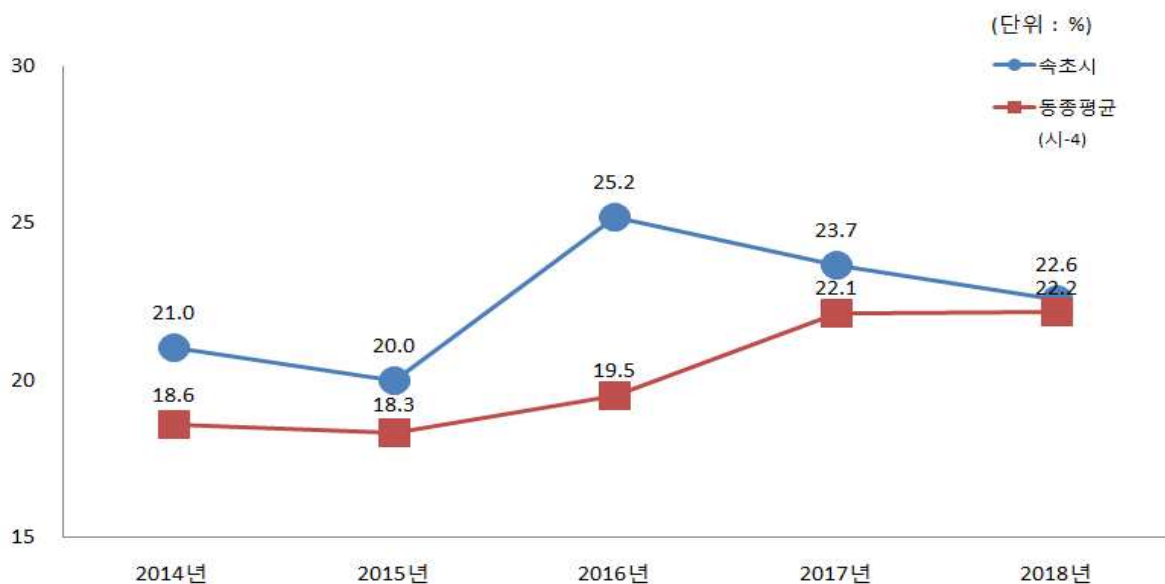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1.03	20.02 (17.14)	25.19 (18.08)	23.68 (17.88)	22.59 (18.4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속초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3.51 (59.34)	270,547	171,817 (160,545)	98,730	-	- (11,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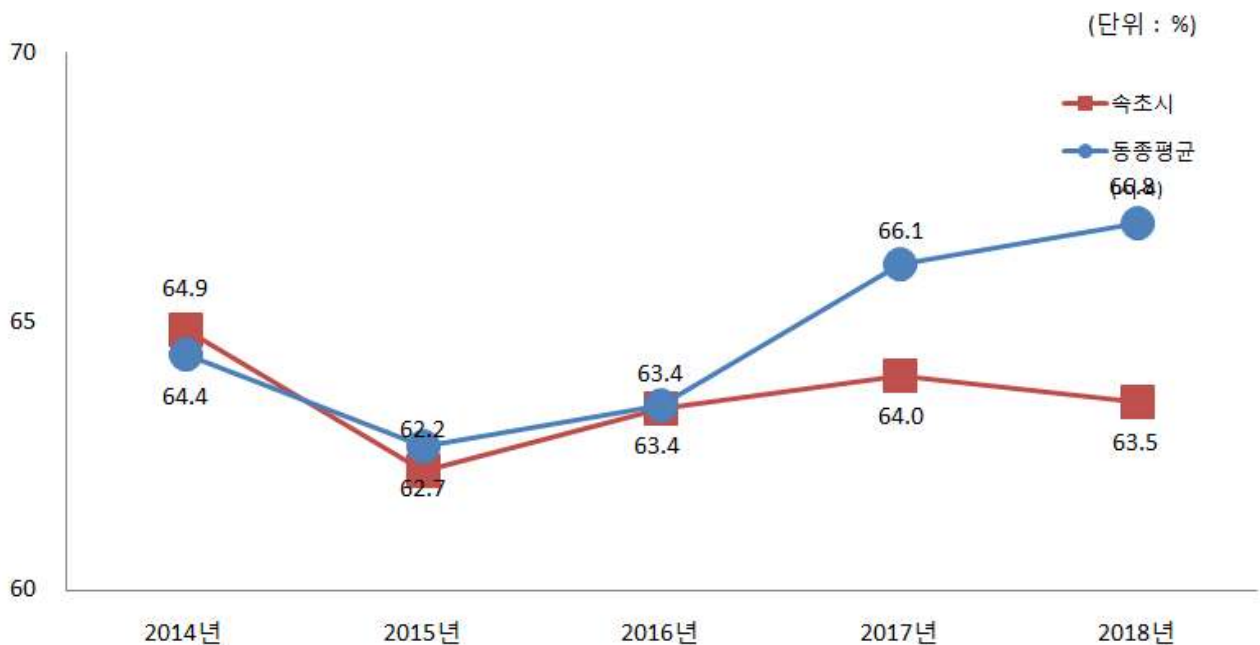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85	62.21 (59.34)	63.38 (56.27)	64.00 (58.20)	63.51 (59.3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속초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9,118	289,983	17	7,980	7,963	11,980	297,946	△8,829	3,151
일반회계	259,527	247,759	0	7,960	7,960	11,020	255,719	3,808	14,828
기타 특별회계	2,705	11,679	0	0	0	240	11,679	△8,974	△8,734
공기업 특별회계	26,219	29,435	0	0	0	720	29,435	△3,216	△2,496
기 금	667	1,111	17	20	3	0	1,114	△447	△447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030	65	△4,719	△3,799	△8,829
통합재정수지 2	3,528	4,780	6,101	9,321	3,151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85,565	390,235	391,237	392,934	393,212	1,953,184	0.5
자 체 수 입	67,793	69,038	69,431	70,367	72,886	349,516	1.8
이 전 수 입	265,226	267,119	267,422	268,035	268,543	1,336,345	0.3
지 방 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546	54,078	54,385	54,532	51,783	267,323	△0.4
세 출	385,565	390,235	391,237	392,934	393,212	1,953,184	0.5
경 상 지 출	109,202	112,414	115,068	117,294	120,637	574,615	2.5
사 업 수 요	276,363	277,821	276,170	275,640	272,575	1,378,569	△0.3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속초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1	14,723
여성정책추진사업	20	5,4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	4,60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0	4,622

-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sokcho.go.kr>)
(행정정보 → 예산/경영 → 지방재정공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속초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11,763	269	모델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운영계획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 원 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69	
기획감사실	효율적 예산운영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지원)	13	계속사업
교육문화체육과	체험장 육성단체 운영 지원	40	"
관광과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관리	47	"
"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	40	"
민원봉사과	새주소 정착지원	29	"
건설도시철도과	보행자도로안전관리	100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sokcho.go.kr>)
(행정정보 → 예산/경영 → 지방재정공시)

4-4. 성과계획서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속초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	58	132	183	282,240	261,331	20,910
본청	1	49	105	146	255,824	234,324	21,500
직속기관	0	2	10	17	8,896	8,056	840
사업소	0	5	16	10	14,578	16,121	△1,543
동주민센터	0	1	0	8	2,203	2,158	45
의회사무기관	0	1	1	2	739	671	67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sokcho.go.kr>)
(행정정보 → 예산/경영 → 지방재정공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59	63.51	37.42	24.41	49.04	77.53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sokcho.go.kr>)
(행정정보 → 예산/경영 → 지방재정공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99	58	-
	부단체장		4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2	214	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4	51	△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0	
	의원국외여비		32	
지방보조금		9,230	8,491	△73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63	774	11
맞춤형복지제도시행 경비		1,031천원/인	856	
공무원 일·숙직비		60천원/인·일	344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반이장반장활동보상금, 공무원 일·숙직비는
기준액 편성

5 재정운용성과

5-1. **교**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5,175	2,560
인건비 절감	314	896
지방의회경비 절감	4	-1
업무추진비 절감	45	4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82	38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578	-427
지방청사 관리·운영	1,516	1,667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316	380
지방세 징수율 제고	-533	543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42	-649
경상세외수입 확충	-344	77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951	-292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에 우리 속초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에 우리 속초시가 중앙부처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